

간호보조원의 업무 및 기능

— 최 상 순

(본회중앙이사·경희의대간호학과부교수)

- I. 서 론
 - II. 간호 보조원의 역사적 배경과 현황파악
 - III. 간호보조원의 정의
 - IV. 간호보조원의 업무 및 기능
 - V. 문제점과 해결방안
 - VI. 결 론
- ※ 참고 문헌

I. 서 론

우리나라는 그동안 3차에 이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자랑스러운 경제발전의 발자취를 남겨 놓았다.

그리고 이제는 1978년부터 시작되는 제 4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복지를 증진 시키며, 경제 사회 발전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물량 중심의 발전 개념에서 사람본위로의 역점 전환으로 특징 지워지는 사회개발을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사회적 참여의 기회증진을 기하는데 목표를 둔 사회개발의 중요한 요건인 국민보건향상은 보건의료요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은 두말 할 여지도 없다.¹⁾ 이와같은 정부의 기본정책에 따라 종합보건 계획의 작업으로서 의료시설, 인력수급 및 교육제도의 평가 개선등이 진행되는 이

때에 우리들은 의료인력의 구조를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성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이 시급하다.²⁾ 그중 간호전문직은 국민건강의 인권을 지켜주는 옹호자로서 기왕에 담당해 왔던 역할이 더욱 확장되고 확산됨에 따라 간호인력 구성원으로서 간호보조원의 업무 및 기능을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II. 간호보조원의 역사적 배경과 현황파악

최근 변천해가는 사회속에서 간호직은 전문화되어 급속으로 향상되는 보건 및 간호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많은 간호교육과정이 대학사회에 합류되며 병원부속의 간호학교가 줄어지므로 교육을 위한 많은 시간의 소비와 투자를 가져오게 되었다.³⁾ 이렇게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의사의 진료행위중 일부분이 전문적 간호행위로 옮겨짐에 따라서 간호분야에도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그룹이 제도화 되었다. 즉 이런 간호기능의 계층적인 집행을 위해 팀의 구성으로 보조역 그룹이 생긴다는 것은 간호구조의 경제효율적인 측면과 효과적인 기능면에서 볼 때 현대 경제사회의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⁴⁾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국민경제 수준이 낮고 간호원들의 해외취업으로 초래되는 수급부족을 대처키 위해 정부가 간호원의 대량 배출과 단기 양성의 간호보조원 제도를 채택하여 1966년부터 간호보조원

의 훈련이 시작되었다. 정부의 원래 목적은 전국 1,342개의 보건지소 발족 시책에 따라 1개지소에 2명씩 간호보조원을 배치하여 전국적으로 농촌 깊숙히까지 의료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데 있었다. 그러나 그 후 해의 파견을 목적으로 해외개발공사가 시작한 사설 보조원 훈련이 동기가 된 사설양성소가 우후 주순 처럼 늘어나 배출수가 막대하게 증가되어 전문적인 간호분야에 크고 작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⁵⁾ 통계적으로 1966년부터 1975년 말까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간호보조원 수는 33,154명으로 1975년말 현재 간호원 수 23,632명보다 9,522명을 앞지르고 있다.⁶⁾ 이러한 수적 증가는 전문교육을 받지 못한 간호 보조원을 지도 감독해야 하는 일선 간호원들에게 업무상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시할 뿐 아니라 훈련과정의 수준이 균등치 못함은 말할 것도 없고 사설훈련기관의 비양심적인 교육의 전개로 저수준의 보조원이 속속 배출되어 국민 건강 복지에 위해를 초래함이 더욱 심각하게 되었다. 또한 간호계는 취업난의 악순환을 거듭하는 현상도 면치 못하게 되었다.⁷⁾

III. 간호보조원의 정의

간호보조원은 대한민국 의료법 제58조에서 “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 간호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다.⁸⁾ 또한 이들은 도지사의 자격 인정을 받기위하여 보건사회부령인 간호보조원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와 4조에 의해 중학교 이상의 학교 졸업자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훈련기관에서 간호보조원 훈련 과정을 이수한 자로 자격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⁹⁾ W.H.O의 출판물에서는 Nursing Aid를 “심부름꾼” “배달자” 또는 “일정한 간호 기능을 수행하는 자”라고 하였으며 그들은 글을 알아야하고 교양이 있어야 한다. 환자간호를 조력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식 훈련이 필요치 않다고 하였다.¹⁰⁾ 실제 미국에서도 각 병원이나 주에 따라 각기 다른 기간의(약 3개월) 교육을 거쳐 Nursing

Aid로 일하고 있기도 하다.

IV. 간호보조원의 업무 및 기능

간호보조원은 의료법 제58조에 의하여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호원에 준하여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간호보조원의 업무한계는 간호보조원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여

1)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

2)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

3) 동규칙 제14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간호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¹¹⁾ 즉 간호보조원의 업무는 현행의 의료법상 위에서 규정했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간호업무의 보조로부터 고도의 지식과 기술 및 판단이 요구되는 간호업무의 수행위자까지 될 수 있게 되었으나 실체는 그들의 기본 교육수준이 낮아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는 간호업무를 기대한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국민은 누구나 건강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볼 때 동시에 누구나 양질의 간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가 능력이 없는 사람의 간호행위로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건강인권의 옹호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간호보조원이 어떤 목적으로 양성되었던간에 현재 많은 간호보조원들은 농어촌 지역사회보다 대도시의 병원에 치중해 있으므로 이제 간호보조원의 업무를 임상 특히 종합병원에 국한시켜 생각해 보기로 한다. 간호보조원은 간호원의 지시를 받아 간호행위를 보조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즉 비독자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고로 간호행위의 수행위자는 어디까지나 간호원이며 만일 잘못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의 1차적인 책임이 지시자인 간호원에게 있게 되므로 간호원들은 간호보조원에게 간호행위 전체를 임의로 시켜 환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비전문적인 업무만을 지시하고 감독해야 된다.¹²⁾ 즉 환자의 신체내부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종류의 간호기술이 아닌 환자의 신체정결과 환경정리 및 각종 부서와의 전달업무 등으로

간호업무를 보조해야 된다. 미국 간호협회에서 간호보조원의 업무를 제한 규정한 내용을 소개 하던 다음과 같다.¹³⁾ 1) 환자가 부르면 가보고 간호원이 시키는 일을 행하고, 상황에 따라 간호원에게 알리는 일. 2) 환자의 입원, 이송 및 퇴원을 돕는 일. 3) 환자의 옷을 입히고 벗기는 일. 4) 목욕을 돕는 일. 5) 환자의 수분섭취와 배설특성을 돕고 기록하는 일. 6) 환자의 식사를 돕는 일. 7) 소변, 대변 및 객담 검사를 위해 수집하는 것을 돕는 일. 8) 환자의 체중특성을 돕는 일. 9) 환자의 침상정돈을 돕는 일. 10) 離被架(bed cradle), 발받침(foot board), 침상 옆 받침(side rail) 같은 기구의 설치와 제거를 돕는 일.¹³⁾ 그의 환자주변의 청결과 정돈을 하며 병동내 필요한 심부름을 하는 일 등이다.

또한 대한간호협회에서 작성한 간호보조원의 업무지침서¹⁴⁾ 및 서울시내 몇몇 종합병원의 업무규정을 검토 하였을 때 위와 비슷한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통합해 보기로 한다.

1. 환자의 신체 청결과 환자 간호에 관계되는 내용

1) 환자의 각종 침상을 준비하고 병실의 편안한 환경 유지를 노력 한다. 2) 환자의 검사 받을 것을 돕는다. 3) 식수, 식사 배설을 도와주고 필요시 먹여준다. 4) 수간호원의 지시에 따라 아침 간호에 참여한다. 5) 환자의 탈의를 도와준다. 6) 환자의 목욕준비 및 시행 7) 변기의 취급 8) 필요시는 간호원의 지시에 따라 알콜 맛사지를 제공한다. 9) 환자에게 필요한 냉온 주머니를 준비한다. 10) 간호원이 환자의 처치시 도와준다. 11) 간호원이 바쁘면 T.P.R 을 재서 보고한다. 12) 환자의 요구, 신호불빛과 신호종에 대답 한다. 13) 환자 상태의 관찰과 보고 14) 환자 진찰시 진료보조에 관한 간호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15) 타과에 진료의뢰시 신속히 연락하여 진찰 받도록 해주며 외래에서는 대기중 중환을 속히 진찰받도록 처리해준다.

2. 환경정리에 관계되는 내용

1) 의약품의 세척과 소독 2) 더러워진 세탁물을 처리하고 깨끗한 세탁물을 공급한다. 3) 4) 비품 및 소모품의 분실이나 수선의 필요시

수간호원이나 간호원에게 보고한다. 4) 물품소독(cup, 쟁반, 슬리퍼, 주전자, 변기 및 농반등) 5) 의류 비품등을 조사하는데 참여한다. 6) 수시로 병동을 청소한다. 7) 환자의 퇴원시 병원 물품을 조사하여 인수하고 퇴원준비를 도와준다. 8) 퇴원한 병실 및 실내물품을 청소 소독하여 입원준비에 대비한다. 9) 처치실, 간호원실, 수간호원실, Linen실을 청결히 하고 치료후에는 정리 정돈을 한다. 10) 환자의 분비물 병들을 비우고 청결히 씻어다 준다.

3. 전달, 운반, 안내에 관계되는 내용

1) 입원환자의 외래 chart 및 old chart를 의무기록실에서 찾아온다. 2) 퇴원환자의 chart를 외래로 돌리고 특수 부서용지는 해당 부서로 돌리고 퇴원 싸인받은 후 원무과로 가져가고 입퇴원 결정서를 올려온다. 3) 공급실 물품의 반환과 청구 수령 4) 특수검사 및 치료시 혹은 수술환자를 해당 부서에 동반하는 일 (OR, 동위원소실, 물리치료실, X-ray실 및 각 외래등) 5) 청구된 약품, 일반소모품, 비품의 수령(제약실, 판타과창고, 약국 등에서) 6) 각종 검사물을 해당 부서로 보내고 결과지를 수령하며 검사용구 및 시약을 타온다. 7) 처방전의 접수 및 약품수령(내복약, 외용약, 주사약, 마약, 처치, 전표등) 8) 린넨의 반환과 청구 수령 9) 각종 청구서 및 보고서 기록의 해당 부서로 전달 10) 방사선과의 왕래(X-ray film 찾기 및 반납, 환자 동반 등) 11) 다른 부서에 연락하는 일을 한다. 12) 환자의 입원수속 절차 안내

V. 문제점과 해결방안

현재 간호보조원의 업무 및 기능 수행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생각해보면

1. 업무의 법적 한계

간호보조원에 관한 규칙 제 2조 1항 3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입원환자 5인미만 또는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의원에 있어서는 간호원 정원의 100퍼센트 이내를 간호보조원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간호보조원으로부터 간호행위를 받게 된다. 또

한 음·면단위의 보건지소에서는 간호보조원이 보건사업을 수행하므로 정부가 마련한 국민 건강사업 시책 균등의 원칙에서 벗어나 지역에 따라, 사람에 따라, 등차적 간호가 제공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하여 간호인이나 비간호인이나 간에 간호보조원을 간호원으로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 한계의 시정이 시급하다. 해결방안으로는 하루속히 정부측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건강인력의 수급계획에 검토와 이에 따른 간호직의 구분 및 필요수를 산정하고 건강사업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의원급 의사들은 간호원을 대신하여 간호보조업무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지도 감독을 해야한다.

2. 간호보조원제도

최근 정부가 시도하는 일차 건강사업을 모든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인력으로 현 간호보조원은 타당치 못하다고 판단된다. 간호보조원의 기초학력이 중졸이란 것은 16세~17세의 미성숙된 연령으로 직업을 갖게되므로 곤란하고 국민의 교육수준 및 보건지식이 상승된 지금 그들의 진정한 도움자가 될 수 없어 곤란하다. 실제로¹⁰⁾도 보건지소에 간호보조원을 두어 면보건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는 실정이고 간호원이 참여하여 능률적인 보건사업이 수행되도록 제도상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고로 간호직 수준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연구검토 후 간호보조원의 한정된 업무만을 위해서는 현 훈련기간을 단축하고 도지사로부터 받는 자격증 제도도 폐지하여 보조인력이 필요한 기관에서 필요성에 맞는 단기훈련을 거쳐 업무에 임하게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현 제도의 개선이 불가능하다면

1) 훈련과정의 강화필요—훈련기관의 양심적 운영과 감독청의 철저한 감독으로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이해시켜야 한다.

2) 배출수의 감소—아주 비전문적인 작은역을 담당할 간호보조원은 바람직한 인력구조상 숫자에 있어 보건의료 전체 인력 수급계획에 의거하여 극히 제한되어야 한다.

3) 기본학력수준의 향상—국민의 교육수준 상

승에 따라서, 또한 인간을 접하는 업무관계로 성숙된 인간이 되어야 하겠기에 적어도 고교 졸업수준이어야 한다.

VI. 결 론

새로운 변천에 따라 간호직이 전문화되면서 비전문적이고 비독자적인 기능을 담당케 하려는 간호보조원제도가 생기게 되므로 간호영역안에 간호직의 구분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분명히 전문직 간호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게된 보조직을 두고 법이나 대중은 간호행위를 허용하므로써 혼돈속에서 간호보조원 자신들도 자기들의 업무한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실훈련기관도 양질의 교육을 행하지 못하므로 간호보조원들은 간호이념의 결여로 자신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업무에 임하게 되므로 실망과 좌절속에 헤메이게 된다. 이들의 업무규정은 현재의 모순된 보사부령 간호보조원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이 선행된 후 바르게 수행되리라 생각되나 여하튼 인간의 신체 내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술 즉 투약이나 주사행위는 할 수 없고 주로 환경조성이나 환자의 신체청결등 사무상 연락이나 전달 및 안내등의 잡다한 보조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간호행위를 돕는 것이다.

참고 문헌

1. 주학중 : 간호의 새로운 전망, 대한간호, 제15권 1호, 1976.2 pp18~22
2. 전산초 : 현대적 전문직업인의 자세, 가정보건사업에 있어서 간호조산원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세미나 보고서, 보건사회부, 1975, 12, pp.19~39
3. 이귀향, 이영복 : 간호계의 최근동향, 간호사회학, 서울 수문사, 1975, pp.124~126
4. 박노예 : 보조원의 실태와 문제점, 대한간호 제10권 2호, 1971, 4 pp.20~21
5. 보건사회부 통계연보, 보건사회부, 1976, pp. 14~15
5. 이영복 : 간호단위 관리, 간호행정, 서울, 수문사 1977, pp.207~209

<76페이지로 계속>

업무를 보면 “보자보건, 가족계획상담, 전염병관리, 진료 및 간호등에 관한 업무를 보조한다”로 되어 있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보자보건요원, 가족계획요원, 결핵요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했었다.

(2) 간호보조원,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 2조의 간호보조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
2.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
3. 규칙 제 14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호원의 정원 전원을 간호보조원으로 충당하였을 경우에 있어서의 간호업무로 되어 있다.

간호보조원,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 14조 제 1호—입원환자 5인 미만 또는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의원에 있어서는 간호원 정원의 100%이내.

규칙 제 14조 제 2호—입원환자 5인 이상을 수용하는 의원에 있어서는 간호원 정원의 50%이내.

입원환자가 5인 미만인 의원급은 입원환자가 있어도 입원 일자가 짧으면 대개 경환자로서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므로 간호원 없이 단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중환자는 거의 종합병원에 이송되어 간호를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본다.

5. 간호보조원의 법적 근거

가. 의료법 58조(간호보조원)

- ① 간호보조원이 되고자 하는자는 도지사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 ② 간호보조원은 제 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간호원에 관한 규

<80페이지에서 계속>

7. 이영복 : 전제서, pp.208
8. 의료법, 제 58조
9. 보건사회부관계법령집, 간호보조원,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 4조
10. W.H.O.; Planning and Programming for Nursing Services,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1971, pp.81
11. 한국간호보조원양성소 연합회 : 기초 간호학 개요 (I), 서울, 지성문화사, 1977, pp.19
12. 이귀향, 이영복 : 전제서 pp.154~155

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

나. 의료법 시행령 제 24조 제 3항(의료인 등의 정원)

보건사회부장관은 간호원 또는 치과위생사의 인력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 1항 제 3호의 정원의 범위내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그 정원을 간호보조원으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 제 1항제 3호 : 간호원(치과의료기관에 있어서는 치과위생사)은 1인 평균 입원환자 5인에 대하여 2인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하며, 외래환자 12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한다. 다만 치과 위생사는 간호원으로 갈음할 수 있다.

결 론

1967년부터 1977년까지 10년 동안에 양성한 간호보조원수는 40,210이며 이중에 국비 간호보조원수는 3,214명에 달하고 있으며, 국비로 양성한 간호보조원들의 대다수는 보건요원으로 보건지소등에서 일하고 있으며 사실양성소에서 양성한 간호보조원들의 일부는 해외(서독)로 진출되었고 그 외는 국내 각 의료기관에 분포되어 있으며 대부분 의원급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의원급에는 상당수의 유자격 요원이 필요되고 있으나 여러가지 여건(근무조건, 보수)등이 좋지 않아 간호보조원 자신이 취업을 원치 않고 있으며 대다수가 보건지소나 종합병원만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와 같이 많은 수의 간호보조원은 요구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간호보조원체도가 계속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13. A.N.A.; Statement on Auxiliary Personnel in Nursing Service, American Nurses Association, 1962.
14. 대한간호협회 : 병원간호원 업무기술서 작성지침, 대한간호협회, 1973. pp.39~41
15. 이은옥 : 간호행정 및 교육에 있어서, 대한간호 제 16권 3호, 6, 1977, pp.22~25
16. 지정옥, 신유선 : 새로운 건강사업을 위한 간호와 시범사업, 대한간호, 제 15권 2호, 1976.4. pp.15~18